

외국인(불법체류 포함)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

외국인 근로자(불법체류 포함)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하여 주세요!

* 외국인 근로자 백신접종 시 사업장 담당자 동행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

백신 접종방법

▶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접종기관의 보유백신 내에서 접종가능하며, 지역 보건소로 문의 후 방문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.

-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(불법체류 외국인 포함)의 경우,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**여권***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백신접종이 가능합니다.

*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,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, 주한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, 사업주가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

▶ 여행 목적 등의 **단기체류자(90일 이후 체류)**는 백신접종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④ 신분정보는 백신 접종 목적으로만 이용되며, **통보의무 면제제도에 의해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 등이 통보되지 않습니다.**

- '21. 12. 31. 까지 백신접종 완료(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필요) 후 자진 출국시 **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단, 형사범, 방역 수칙 위반 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되며,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은 **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1345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④ 개인별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백신접종장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④ 기타 백신정보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처 등은 **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** (<http://ncv.kdca.go.kr>)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'21. 11. 1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,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은 지역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